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0
----------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영동 의원, 양은숙 의원

1. 개정이유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달성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정의와 운영지원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3장)
- 나. 전자우편의 일상화에 따른 정의·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
- 다. 홈페이지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조 및 제17조)
- 라.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 ## 4.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 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 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을 ““인터넷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홈페이지 라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

한 민원사무”를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조제6호(중전의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2조제8호(중전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9호(중전의 제8호) 중 “정보화부서의 장 이라 함은”을 ““정보화부서의 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함은”을 ““소관부서의 장”이란”으로, “의한”을 “의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라 함은”을 ““홈페이지운영요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시”를 “군수는 정보화부서,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 중 “등록한”을 “등록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등”을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종전의 제3장)에서 제8장(종전의 7장)까지로 하고, 제3장(제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의정 홍보, 이용자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종전의 제3장)의 제목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민원담당부서의”를 “법 제36조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의”로,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민원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그러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민원상담 기능 제공)”을 “(민원상담 제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을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

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를
“법에 따른 민원에” 로 한다.

제13조 중 “군수는” 을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로
한다.

제6장(종전의 제5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종전의 제6장)의 제목 중 “운영” 을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록되어 있는” 을
“수록된” 으로, “DB” 는 “데이터베이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 “인터넷” 이란 ----- ----- -----.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란 ----- ----- -----.
〈신 설〉	3. “이용자” 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홈페이지” 란 ----- ----- -----.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 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신 설>

5. 전자우편 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정보화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군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군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라 함은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자를 말한다.

<신 설>

5. “전자민원”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

5의2. “전자민원창구” 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6. <삭 제>

7.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8. <삭 제>

9. “정보화부서의 장” 이란 -----.

10. “소관부서의 장” 이란 ----- 의해 -----.

11.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란 -----.

12. “사회관계망 서비스” 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인터넷시스템은 정보화부서에서 구축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생략)

5. 전자우편 ID 이용

6. (생략)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신설>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자민원창구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 위해 -----

③ -----
----- 군수는 정보화부서,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② (생략)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등록) ① (생략)

②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운영요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관리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록하고자 하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에 -----

수 있다.

1. ~ 7. (생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

-----.

1. ~ 7. (현행과 같음)

8. -----
----- 사람이 -----

9. 그 밖에 -----
-----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 -----

제7조(정보공개 청구)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의정 홍보, 이용자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전자민원-----
----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

행령」 제11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 법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의 -----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 -----.

④ 전자민원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삭 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 대화방 운영) ① (생략)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민원창구

----- 예외로 한다.

③ -----

----- 사람-----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제공) ① -----

-----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을 -----

-----.

② 전자민원창구를 -----

예외로 한다.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 대화방 운영) ① (현행)

략)

②군수와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전자우편 ID 관리 및 보급

제14조(전자우편 관리) ①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의 사용자수, 사용자별 용량은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과 같음)

② -----

----- 법에 따른
민원에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

-----.

제6장 <삭 제>

<삭 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신 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 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② (생략)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수록된 -----
데이터베이스-----
-----.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 타법개정, 2022.7.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법률)」(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